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별표의 일부 수수료 종류 및 요액조정 및 어업 수산업 관련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 중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수수료 징수 시 현금 외 다양한 수수료 지급수단을 통한 수수료 징수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 단위의 수수료 통일 징수기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다양한 방법의 수수료 지급방법으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3조의2)
- 나. 별표의 수수료 요율 조정 및 신설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된 5종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종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어업 수산업 관련 수수료 4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 : 원)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다. 별표의 수수료 징수 단위 변경 :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 징수 단위를 종전 1필지 1개년에서 1필지로 조정하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 징수 단위를 종전 1호 1개년에서 1주택으로 조정함(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10.7 ~ 2010.10.2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의 종류 16종을 15종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단위를 1필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1)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단위를 1주택으로 한다.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종류 54종을 62종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1)공유재산 대부신청 나)란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5)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법인, 개인) 수수료를 800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사. 어업 수산업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 : 원)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위	수수료액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다.~바. (생략)			다.~바.(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어업 수산업에 관한 사항 <u>1)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u> <u>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수수료</u> <u>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u> <u>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외) 재발급 수수료</u>	 1건 1건 1건 1건	 <u>800</u> <u>800</u> <u>1,000</u> <u>1,000</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